

남원시 공고 제2012 - 1066호

### 남원시 방재성능목표 공표

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「남원시 방재성능목표」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10월 10일

### 남 원 시 장

- 1. 목 적 :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.
- 2. 근 거 :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(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·운용)
- 3. 방재성능목표

| 지역명 | 강우지속기간 |      |       |
|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
|     | 1시간    | 2시간  | 3시간   |
| 남원시 | 75mm   | 95mm | 115mm |

#### 4. 방재성능목표 적용(운용) 대상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
  - 가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
  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(遊水池)
  - 다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

라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설

#### 5. 방재성능목표 적용(운용)

-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
- 하수관거, 저류지,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시 적용
-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
-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
  -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, RRL 모형, ILLUDAS 모형, SWMM 모형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

#### 6.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: 공고일 부터